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필수예방접종약품의 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한 비축 및 장기계약 체결 규정 마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위임 사항 및 재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세부절차 마련,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 및 교육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 법에서 위임한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련 규정 마련 (안 제18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9조의9, 별표 3)
- 나. 격리치료 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사항 정비(안 제23조, 별표 2)
- 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안 제29조)

라. 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질병관리본부 위임 사항 정비 및 재위탁 규정 마련(안 제32조)

마.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한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해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 추가(안 제32조의3)

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안 제21조의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제23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호 중 “고위험병원체의”를 “고위험병원체”로,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를 “성명·주소 및 연락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를 받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 직위, 연락처

제1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검사·보존·관리”를 각각 “검사·보유·관리”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중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제1항제2호 중 “검사·보존·관리”를 “검사·보유·관리”로 한다.

제19조의8 및 제1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허가 사항)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할 계획 또는 의도가 없었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으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2. 동물, 식물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3. 식품 또는 토양 등 환경검체로부터 분리되어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의9(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 및 연락처와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

제2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2제3항”을 “법 제33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법 제33조의2제4항”을 각각 “법 제33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절차”를 “절차, 법 제42조제11항에 따른 격리의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을 “감염병의심자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드러나”를 “노출된”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전단 중 “법 제60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을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역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0

조의3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료비

가. 지급범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기한: 진료비 신청기한은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9조제3호나목 중 “등급의 기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를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청기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신청기한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분리”를 “분리, 분양·이동”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2를 제1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4(중전의 제12호의2) 중 “법 제33조의2제1항”을 “법 제33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37조”를 “법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및 제37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3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입원”을 “입원 통지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격리자에 대한 격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의2 중 “제5항까지”를 “제4항·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8조의2제1항·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23조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23조의5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관한 업무

1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에 관한 업무

12의3. 법 제33조의3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

12의5.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

13의3.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에 관한 업무

15의2.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

17의5. 법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 관한 업무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9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4”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제목을 “입원치료의 방법”에서 “입원치료”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원치료의 방법

1)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이라 한다) 및 제1급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시켜야 한다. 다만, 1인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2) 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 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음

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방역관이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음압 1인실 또는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 하고, 단독 시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한다.

3)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한다.

4)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하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한다.

5)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문자에 대하여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6)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며 사용 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입원치료의 절차 등

1)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한다.

3) 입원치료 대상자의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4) 입원시설의 장 및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를 통하여 입원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증상은 소멸되었으나 감염력이 있는 회복기 병원체보유자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거나 시설치료 및 자가치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목 “자가치료의 절차 등”을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로 하고,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방법

- 1)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방에 있어야 한다.
- 2) 1)에 따른 자가치료가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 3)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 4)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한다.
- 5) 간병인을 포함한 방문자들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문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 6)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하며 사용 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절차 등

- 1)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감염병환자등 및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2)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의 경우에는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하고, 감염병의심자의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과 최종 접촉한 날,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최종 노출된 날로부터 최대잠복기까지로 한

다.

3) 관할 보건소장은 2)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가. 시설 격리의 방법

1) 격리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리 중인 사람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격리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한다.

4) 격리시설 출입자는 의료진, 관계공무원 등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하며 사용 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 격리의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감염병의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으며, 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격리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최종 접촉한 날,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최종 노출된 날로부터 최대잠복기까지로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은 2)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설격리의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에 “고려하려”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라목부터 사목을 바목부터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위반행위 다목과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100	200
마.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2호	50	1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의2 · 제21조의3 · 제21조의4 · 제23조 · 제25조 · 제29조 · 제32조제1항제1호의2 · 제1호의3 · 제1호의4 · 제12호의2 · 제12호의4 · 제12호의5 · 제13호의3 · 제15호의2 · 제20호의2 · 제32조제2항 · 제3항 · 제4항 · 제32조의3의 개정규정 : 공포한 날
2. 제24조 · 제32조제1항제17호의5의 개정규정 : 2020년 6월 5일

3. 제23조의3 · 제26조의3 · 제32조제1항제4호의2 · 제13호 · 제17호의
개정규정 : 2020년 9월 5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7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1. <u>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것</u> 2. <u>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u> 3. <u>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u>	<u><삭 제></u>
<u>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1. <u>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u> 2. <u>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 및 소속</u>	<u>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u> <u>-----</u> <u>-----</u> <u>-----</u>. 1. <u>고위험병원체 -----</u> <u>----- 성명·주소 및 연락처</u> 2. <u>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u>

<신 설>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치·운영의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설비·인력 및 안전관리

3.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의 과정에서 인체에 대한 위해(危害)가 발

· 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 직위, 연락처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

----- 질병관리본부장-----

-----.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관리본부장-----

--.

1. (현행과 같음)

2. ----- 검사·보유·관리 -----

3. ----- 검사·보유·관리 -----

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인체 위해방지시
설”이라 한다)의 설비·인력
및 안전관리

③ ~ ⑥ (생 략)

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
설 변경신고)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9조의6(고위험병원체 취급시
설 설치·운영의 안전관리 준수
사항) ①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
리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
·관리 및 이동과 관련된 안
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
설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 이 경우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제19조의6(고위험병원체 취급시
설 설치·운영의 안전관리 준수
사항)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검사·보유
·관리 -----

시설에 외부전문가,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것

3. ~ 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의 보유에 대한 사후허가 사항)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정”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를 분리할 계획 또는 의
도가 없었던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으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
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2. 동물, 식물의 질병진단과정
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고자 하는 경
우

3. 식품 또는 토양 등 환경검체
로부터 분리되어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의9(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의 보유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2(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u>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u>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다음	<u>제23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1. <u>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u> 2. <u>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 및 연락처와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u> 3. <u>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u>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질병관리본부장</u>-----. 제21조의2(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u>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u>----- ----- ----- -----
---	---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1조의3(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21조의4(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열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 법 제33조의4제3항-----

-----.

1. · 2.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① ----- 법 제33조의4제4항 -----

-----.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격리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거나 격리·치료 등을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

② ----- 법 제33조의4제4항 -----

-----.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

----- 절차, 법 제42조제11항에 따른 격리의 방법 -----
-----.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격리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

-----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감염병환자들을 위한 1인 병실[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을 말한다]을 설치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략)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생 략)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치권한 외에 방역관이 가지는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2. 3. (생략)

4.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

1. ~ 13. (현행과 같음)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감염병의심자를 -----

2. · 3. (현행과 같음)

4. _____

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나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

----- 노출된

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 ①

---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역관-----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

-----.

1. 진료비

가. 지급범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생략)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생략)

나. 가목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기한: 진료비 신청기한은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
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
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
에 등급이나 장애 등급의
기준별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신 설>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
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
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생 략)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
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
임한다.

-----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본부장
이 정하여 -----

다. 신청기한: 장애인이 된 사
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신
청기한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
상금

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
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
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신청기한
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
내로 한다.

5.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탁) ①-----

-----.

1. (생략)

<신설>

1의2. (생략)

1의3. (생략)

2. ~ 4. (생략)

<신설>

5. ~ 5의5. (생략)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업무

7. ~ 8의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8조의2제1항·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
앙감염병전문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
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
무

5. ~ 5의5. (현행과 같음)

6. -----
---- 분리, 분양·이동 ----

7.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생
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
가 등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23조의4에 따른 고
위험병원체 취급 기준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23조의5에 따른 고
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관한
업무

9. ~ 12. (생 략)

<신 설>

<신 설>

12의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의 수집·관리·보유 및 자료제공 요청, 예방접종 내역 제공과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자료 요청 업무

<신 설>

13. 법 제37조에 따른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

13의2. (생 략)

<신 설>

9. ~ 12. (현행과 같음)

1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에 관한 업무

12의3. 법 제33조의3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

12의4. 법 제33조의4제1항----

--

12의5.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

13. 법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및 제37조----

13의2. (현행과 같음)

13의3.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에 관한 업무

14. ~ 15. (생략)

<신설>

16. (생략)

17. 법 제43조에 따른 감염병환
자등의 입원 통지에 관한 업
무

17의2. ~ 17의4. (생략)

<신설>

18. ~ 20. (생략)

20의2. 법 제7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치정보
요청, 수집한 정보의 제공, 정
보를 제공받은 자의 파기 통
보 및 통지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
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4호부
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14.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

16. (현행과 같음)

17. -----
---- 입원 통지 및 법 제43조
의2에 따른 격리자에 대한 격
리 -----
--

17의2. ~ 17의4. (현행과 같음)

17의5. 법 제49조의2에 따른 감
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 관
한 업무

18. ~ 20. (현행과 같음)

20의2. -----
제4항 · 제6항 및 제7항-----

② -----

---- 제9호, 제14호부터 제17호
까지 및 제70조-----

있다.

1. ~ 4. (생략)

<신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

-----.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
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
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
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제20조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
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보건소장 또는 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
염병 표본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1. ~ 7. (생략) 8.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2,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u>제33조의2</u>의 규정에 따른 예 방접종에 관한 사무 9. ~ 13.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 ----- <u>제33조의4</u>----- ----- 9. ~ 1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506